

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686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년 5월 2일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현행 조례에 위원의 연임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바, 개정안에 연임 규정을 보완하여 임기 조정에 따른 원활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“1년으로 한다.” 를 “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” 로 수정하여 연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제1항).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
- 기타사항 : 「수정안조문대비표」 참조

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1항 중 “한다.”를 “하되, 연임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6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<u>2년</u>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6조(임기) ① ----- ---- <u>1년</u>으로 한다.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6조(임기) ① ----- ---- 1년으로 <u>하되, 연</u> <u>임할 수 있다.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“2년”을 “1년”으로 하고, “한다.”를 “하되, 연임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<u>2</u>년으로 <u>한다</u>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6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<u>1</u>년으로 <u>하되, 연임할 수 있다</u>.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